

## 청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26년도 제2회 청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5월 22일

청주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 1. 선발개요(총11명)

| 임용예정분야                       | 임용직급                                      | 선발예정인원 | 임용기간      | 근무예정부서                     |
|------------------------------|---|--------|-----------|----------------------------|
| 정책지원관<br>(일반행정분야)            | 지방행정주사보<br>일반임기제<br>(주 40시간)              | 2명     | 임용일로부터 2년 | 청주시의회사무국                   |
| 전문위원실<br>행정지원<br>(위원회 운영 지원) | 시간선택제<br>임기제공무원 마급<br>(9급 상당)<br>(주 35시간) | 7명     | 임용일로부터 1년 | 청주시의회사무국<br>상임위원회          |
| 부속실비서                        | 시간선택제<br>임기제공무원 마급<br>(9급 상당)<br>(주 35시간) | 2명     | 임용일로부터 1년 | 청주시의회사무국<br>의장부속실<br>국장부속실 |

- ※ 임용기간은 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시, 실적에 따라 계약기간을 포함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 근무처는 인사운영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2. 임용예정분야별 주요업무

| 임용예정분야            | 주요업무   |
|-------------------|--|
| 정책지원관<br>(일반행정분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li> <li>·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li> <li>·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li> <li>·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li> <li>·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li> <li>·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li> <li>· 기타 의원 의정활동을 위한 일반 행정지원 등</li> </ul> |

| 임용예정분야                       | 주요업무  |
|------------------------------|---|
| 전문위원실<br>행정지원<br>(위원회 운영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임위원회 의사진행 지원</li> <li>· 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등에 관한 지원</li> <li>· 전문위원실, 회의실, 의원 집무실 관리 및 내방객 응대</li> <li>· 위원회 소관 기타 행정업무 지원 등에 관한 사항</li> </ul> |
| 부속실비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관리 및 지시사항 이행</li> <li>· 행사 일정 및 요지 등 문서 작성</li> <li>· 내방객 및 민원인 응대</li> <li>· 부속실 내 환경정리</li> <li>· 기타 분장상 업무</li> </ul>               |

### 3.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4. 응시자격

####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 【 결 격 사 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

○ 거주지 및 성별 : 제한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요건** : 다음 자격요건 중 각 호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채용분야<br>(채용직급)                           | 채용자격 기준   |
|--|---|
| <b>정책지원관</b><br>(행정/급/일반임기제)<br>(일반행정분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li> <li>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ul> <p>▶ <b>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 지방자치, 지방행정, 감사, 예산, 정책기획, 법제, 법률해석, 법·제도 연구 및 조사·분석 등 관련 근무경력</li> </ul> |

| 채용분야<br>(채용직급)                           | 채용자격 기준   |
|--|---|
|  | *2026년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른 공공기관 고시(재정경제부)<br>**2026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행정안전부)  |
| <b>전문위원실<br/>행정지원</b><br>(위원회 운영 지원)     | ·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b>▶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b><br>-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u>지방자치, 지방행정, 감사, 예산, 정책기획, 법제, 법률해석, 법·제도 연구 및 조사·분석 등</u> 관련 근무경력<br>*2026년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른 공공기관 고시(재정경제부)<br>**2026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행정안전부) |
| <b>부속실 비서</b><br>(시간선택제임기제<br>마급/ 9급 상당) | ·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b>▶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b><br>-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u>행정 또는 비서업무</u> 근무 경력<br>*2026년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른 공공기관 고시(재정경제부)<br>**2026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행정안전부)  |

- ※ 시험공고일 현재 “실무경력 인정 분야”의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시간선택임기제는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며, 일반임기제는 관련분야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
- ※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명시되어야 함
- ※ 면접심사 시행 예정일 기준 응시 자격요건은 상기 공통요건 및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책임소재가 명확한 담당자급 이상 경력을 인정하며, 사무보조·행정지원·연구보조·단순노무 등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대체(보완)서류 제출
  - \* 대체(보완)서류 예시 :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 \* 폐업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 ○ 경력인정 및 자격인정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시간제 근무 경력일 경우, 주 40시간 대비 경력 산정하여 인정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한 경우 경력 불인정 사유가 될 수 있음에 유의)

## 5. 임용예정일 및 보수 관련

- 임용예정일 : 2026년 7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보수액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 임용분야          | 직급                    | 근무시간              | 연봉액(천원)  |          |
|---------------|-----------------------|-------------------|--|----------|
| 정책지원관         | 일반임기제<br>(행정7급)       | 주40시간<br>(1일 8시간) | 일반임기제공무원(7급상당)의 연봉 하한액<br>(50,272천원) 기준 책정(지급) |          |
| 전문위원실<br>행정지원 | 시간선택임기제 미급<br>(9급 상당) | 주35시간             | 상한액  | 하한액      |
|               |                       |                   | 47,844천원                                       | 25,325천원 |
| 부속실 비서        | 시간선택임기제 미급<br>(9급 상당) | 주35시간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연봉하한액을<br>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지급)함    |          |

- ※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 연봉외 수당(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초과수당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 성과연봉 :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연도에 성과연봉 추가지급
-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 6. 선발방법 및 시험일정

- 1차시험(서류전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공고**
  - 1)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2)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시행
- 인적성 검사
  - 1)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온라인 인적성 검사 실시
  - 2) 결과분석 자료를 면접시험 위원에게 제공하여 심층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 3) 인적성검사 미응시자는 면접시험 응시 불가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검사요령 및 기간을 안내(공고문 외 개별 안내 없음)

### ○ 2차시험(면접시험)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공고

-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가
  - (평가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인적성검사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평가요소별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가하여 평정성적(총점) 산정
- 2)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자질 및 발전 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3)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청주시의회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공고

####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된 사람의 임용 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추가합격자의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의 차점자로 결정할 수 있음.

#### ○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시(예정)                | 합격자발표(예정)                    |
|--|------|-------------------------|------------------------------|
| 2026. 6. 4.(목)<br>~<br>6. 8.(월) [3일간]<br>09:00~18:00 | 서류전형 | -                       | 2026. 6.15.(월)<br>청주시의회 홈페이지 |
|  | 면접시험 | 2026. 6.25.(목)~6.26.(금) | 2026. 6.29.(월)<br>청주시의회 홈페이지 |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및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6. 4.(목) ~ 6. 8.(월) / 3일간

나. 접수처

(방문접수) 청주시의회(임시청사) 2층 의회사무국 의정팀

(우편접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9 (북문로1가, 구KT사옥)

청주시의회(임시청사) 의회사무국 의정팀 (채용담당자) 우)28529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제출 또는 대리접수가 가능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

(우편접수)

- 우편접수(등기)는 마감일 우편소인에 한해 유효함.
  - ※ **응시번호 문자 통보 : 원서접수 마감 후** (의정팀 채용담당자 : ☎ 043-201-3017)
-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 또는 면접일 당일 배부
  - ※ 응시수수료 :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 동봉, 받을 분 기재금지**
  - ※ **정부수입인지 불가**
  - ※ 택배,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8. 제출서류

※ ①~⑩ 필수제출, ⑪~⑬ 해당자 제출 (응시자격요건에 따라 다름)

①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해당 금액의 청주시수입증지 구입 후, 응시원서에 부착

※ 구입처

-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민원실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1층)
-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민원실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본관 2층)

▶ 등기우편 접수자 → 우체국통상환증서 동봉

· 응시수수료 : 일반임기제 7급 **7천원**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9급상당)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② 이력서 1부

※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 (**증빙자료가 없는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③ 서류전형 제출자료 1부 ※ 채용분야 관련경력만 기재

- 관련분야 실무경력의 기재내용은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필요

※ 첨부된 증빙자료 중 임용분야별 임용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경력만 인정

④ 자기소개서 1부 (경력 및 추진실적 중심으로 작성 / 출생지·학교명 기재 금지)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A4용지 2매이내)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⑦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중요, 경력요건이 아닌 경우 해당없음)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기재 (수기로 가능)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 당해 분야 임을 직접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부서, 근무기간 기재)

- **반드시 주 근무시간 및 담당업무 명시 →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 불인정

- 정확한 경력 확인을 위해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으로 제출

공고일 6개월 이내 발급분도 인정 → 확인이 어려울 경우 추가자료 요청

⑧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 반드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1577-1000번

⑩ 학위 보유 현황 및 증빙자료 각 1부

- 학위별 학위취득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각 1부.

**ex) 최종학위가 석사일 경우 → 학사, 석사 학위취득증명서(졸업증명서 등) 제출**

- 외국 학위의 경우 번역본 첨부

⑪ 직무 관련분야 자격 증명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⑫ 학위·연구논문 사본 등 연구실적 증빙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5페이지 이내로 제목과 저자명이 나타나는 표지(사본)와 논문 요약서를 제출  
(요약서가 아닐 경우 서류·면접 전형 등에 참고하지 않을 수 있음)

⑬ 기타 실적 또는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5페이지 이내로 제목과 저자명이 나타나는 표지(사본)와 요약서를 제출

### [유의사항]

- 상기 제출서류는 편철, 스테플러, 견출지 사용 없이 위 순서대로 제출
- 응시원서 붙임서류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출생지·학교명 등 개인신상을 노출하지 않도록 유의
- 증빙자료가 없는 학력·경력 등은 인정하지 아니함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 9.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과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관련 규정에 준하여 적용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람
- 청주시의회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원본을 반환해 드림
-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내용이 미비하거나 제출하지 않음(폐업 등에 따른 미제출 포함)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채용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진행 ※기존 응시원서 제출지는 재공고 시 응시번호 그대로 반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의 합격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
-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에 따라 공직자는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면접합격자에 한해 정당 미가입 확인서(기 정당가입자는 탈퇴확인서)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됨

## 10. 채용관련 문의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청주시의회 채용담당자(☎ 043-201-3017)